#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2014노3022]



## 【전문】

【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임표(기소), 전수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단945 판결

### 【주문】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 피고인 1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2의 보도침범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보도침범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경하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나.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데에는 옆 차로에서의 선행사고들이 큰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 피고인 1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2의 보도침범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보도침범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경하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나.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데에는 옆 차로에서의 선행사고들이 큰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유]

- 1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 피고인 1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2의 보도침범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보도침범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 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나.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데에는 옆 차로에서의 선행사고들이 큰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이유]

- 1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 피고인 1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2의 보도침범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보도침범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나.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데에는 옆 차로에서의 선행사고들이 큰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이유]

### 1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2의 보도침범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보도침범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 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데에는 옆 차로에서의 선행사고들이 큰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 피고인 1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2의 보도침범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보도침범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경하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나.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데에는 옆 차로에서의 선행사고들이 큰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이유]

- 1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 피고인 1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2의 보도침범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보도침범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경하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나.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데에는 옆 차로에서의 선행사고들이 큰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